

2025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상명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서울)에서는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생 현장 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I 프로그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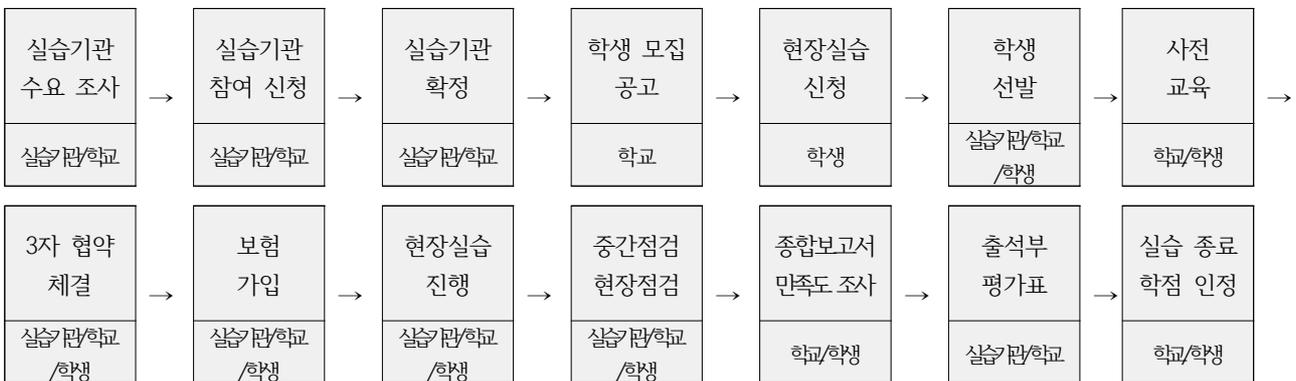
1. 목적

- 가. 학생에게 전공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진로 탐색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함
- 나. 실습기관에 전공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대학과의 산학 협력 관계를 강화함

2.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일정

일자	내용	비고
7.15.(화) ~ 8.15.(금) 13:00	학생 신청	. 참여 실습기관 안내
		. 학생 모집 안내
8.22.(금)	학생 선발 완료	. 서류 및 면접전형
8.25.(월) ~ 8.29.(금)	사전 교육	. 실습생 전원 참여(학교 진행)
	3자 협약 체결	. 3자 협약서(실습기관-학교-학생) 작성
	보험 가입	. 실습기관(산재보험), 학교(상해보험) 가입
9. 1.(월) ~ 12.31.(수)	현장실습학기제 진행	. 실습 진행(16주)
실습 종료 후	학점 인정	. 전공선택 또는 융합선택 15학점

3. 운영 절차



II 학생

1. 지원 자격

가.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학년 1학기부터 참여 가능)

나.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가능자

* 현재 8학기/초과학기/휴학/유예/수료생/기존 학기제 프로그램(해외 포함) 참여 학생 지원 불가

*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하거나 선발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 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 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은 학점인정 불가

2. 실습 기간 및 시간

가. 실습 기간: 2025. 9. 1.(월) ~ 2025.12.31.(수) 중 16주

나. 실습 시간

1)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기준으로 주 5일 운영

단,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2) 1주간 40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 시간 연장 가능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은 운영할 수 없음.

단,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 학교와 실습기관은 운영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알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학점 인정

가. 학점 인정 사항

구분	내용
인정 학점	전공선택(제1, 2, 3전공) 또는 융합선택 15학점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전공명	현장실습학기제(000)
기타 사항	심화전공, 연계전공은 학점 인정 불가능

나. 세부사항

1) 실습 종료 후 평가표, 출석부, 학생 운영 중간점검서, 학생종합보고서 등을 평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 제2전공, 제3전공, 융합전공으로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함

2) 학점 인정은 실습 직무와 연관성 있는 전공에 한하여 가능하며, 해당 사항은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를 확인 요망

3) 성적은 P(급제)/F(낙제)로 부여되며, 학점 수는 반영되나 평점 평균에는 포함되지 않음

4) 중도 포기자 성적 처리

가) 실습생 본인의 귀책사유(결근, 지각 등)에 의한 중도 포기: F 처리

나) 실습기관의 부당한 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실습기관 재배치를 통한 실습 지속

다. 수강 신청 안내

- 1) 선발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방식대로 수강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최종 선발된 학생에 한해 해당 과목은 일괄 수강 취소될 예정입니다.
- 2) 실습시간과 중복되는 대면 교과목은 수강이 불가함
- 3) 대면 교과목은 실습 종료 후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수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수강 가능
- 4) 사이버 강의(녹화 강의)는 실습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수강 가능

4. 실습기관 점검

- 가. 신규 참여 실습기관은 사전 서면 점검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함
- 나. 화학물 및 유해 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등의 경우 실습기관을 방문해 사전 현장점검을 시행함
- 다. 신규 참여 실습기관, 기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습기관은 현장점검을 시행함

5. 보험 가입

- 가. 상해보험(학교)과 산재보험(실습기관)은 실습 시작일 이전 필수로 가입해야 함
- 나. 실습기관은 산재보험 가입 후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증명서를 실습 시작 후 1주일 내 학교로 제출해야 함

6. 휴일 보장 및 출석 관리

- 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함
- 나.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 1)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의무 수행일
 -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일
 -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 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해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를 시행
- 다. 기계작동 및 실험 기반 실습 등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교육 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하에 실시되어야 함
- 라. 공휴일, 휴일(추가적 유급휴일 포함)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 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해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 학기제가 시행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 관리함
- 마. 재난 상황 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 기간(또는 일수)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시행할 수 있음
 - 1) 재택실습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 일수로 인정함
 - 2) 재택실습은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 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해야 함

7. 협약 체결

가. 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3자 협약을 체결함

나. 학교의 대학일자리본부장 ↔ 실습기관의 대표자 ↔ 학생 간 체결

다. 진행 절차

1	협약서 초안 작성 및 상호 확인	· 학교에서 작성해 실습기관 전달 및 상호 확인 후 확정 · 제출 방법: E-mail 발송
↓		
2	학교 및 학생 협약서 날인 후 실습기관 송부	· 제출 방법: 우편 발송
↓		
3	실습기관 직인 날인 후 2부(학교, 학생) 회신	"

8. 실습지원비 지급

가. 산학협력법 제11조의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실습기관 실습지원비+학교 실습지원비)을 선지급하고, 학교는 학교 실습지원비 1,925,760원(16주 기준, 2025년 최저시급의 25%)을 실습 정상 종료 후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학교 실습지원비 1,925,760원(16주 기준, 2025년 최저시급의 25%) 학생에게 지급] + [실습기관 지원금] 지급
※ 실습기관별 지원 금액 상이

마.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 3) 직무수행 실습 시간: (전체 실습 시간-교육 시간)

9. 현장실습 중 문제 발생 대처 방법

가. 실습기관 또는 학생 개인의 사정으로 실습기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에 통보하고 실습기관과 학생, 학교의 동의하에 협약과 운영계획서 등을 변경하여야 함

나. 문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학교(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로 연락하여야 함

다. 학교(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는 학생 및 실습기관 담당자와 유선 연락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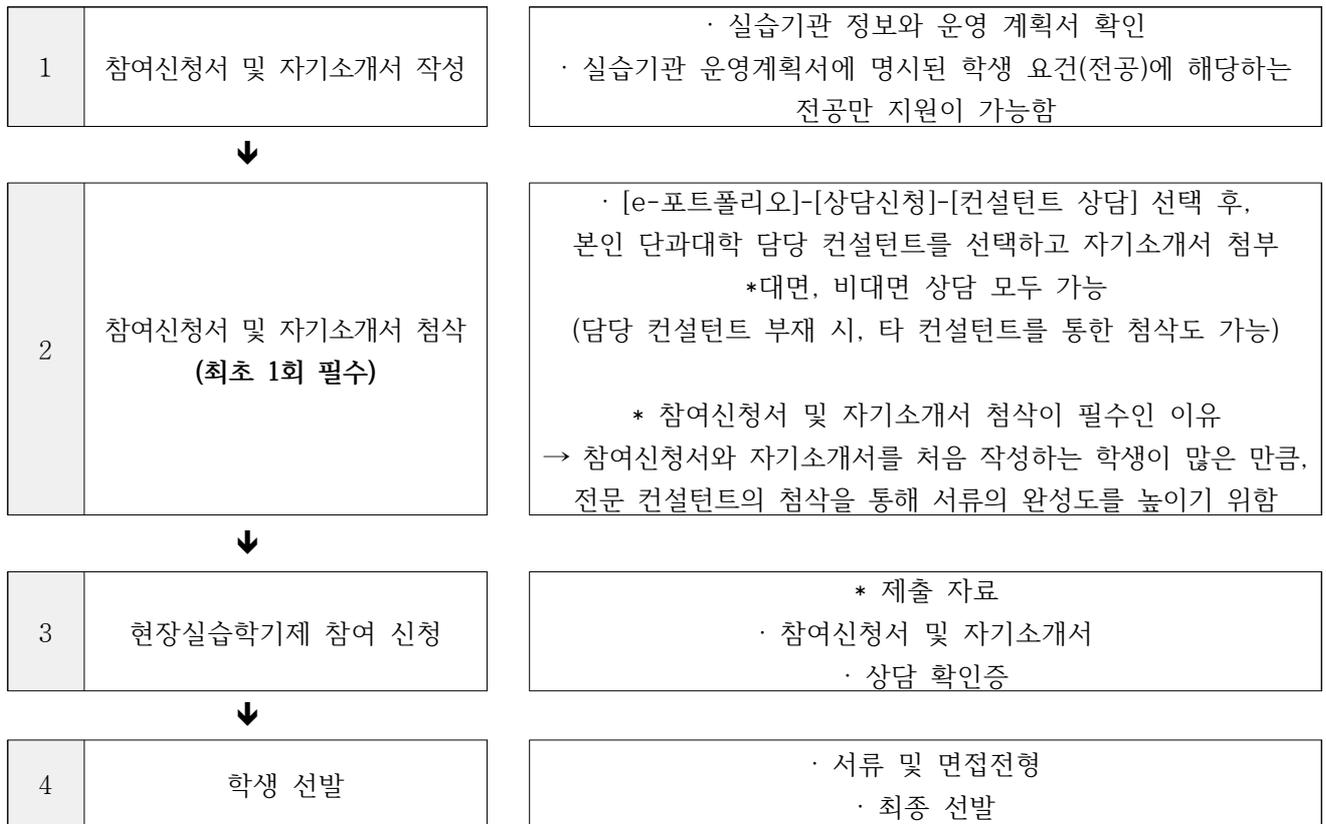
라. 준수 사항

- 1) 실습기관의 근무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2) 사전 직무교육은 반드시 참가해야 하며, 불참 시 실습 참여를 제한함

- 3) 사전 안내된 공지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4) 실습에 관한 서류는 지정된 제출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5) 실습 중에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
- 6) 최종 선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습을 취소하거나,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서울) 및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운영하는 타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7) 실습을 정상적으로 종료하였더라도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점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Ⅲ 프로그램 신청

1. 신청 및 선발 과정



2. 유의사항

- 가. 중복 지원 불가능
- 나. 지원한 기관에서 불합격할 경우, 재지원 가능

Ⅳ 문의처

· 상명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서울), 02-2287-7176